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185 제출연월일: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 제4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63조(벌칙)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 |
|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 |
| 벌금에 처한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제4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 <u><삭 제></u> |
| 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 | |
| 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 |
| 업무를 수행한 자 |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제65조(과태료) <u><신 설></u> | 제65조(과태료) ① 제43조에 따른 |
|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
| | 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 |
| | 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자에게 |
| |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
| | <u>과한다.</u> |
| <u>①</u> · <u>②</u> (생 략) | $\underline{2} \cdot \underline{3}$ (현행 제 1 항 및 제 2 항과 |
| | 같음) |
| <u>③</u> <u>제1항 및 제2항</u> 의 규정에 따 |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 |
| 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
|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군수 | |
|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